

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회의 조례

소관부서 : 보건소(보건위생과)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124호
일부개정 2012·8·8 조례 제94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 따른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·8·8>

제2조(설치) ①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2·8·8>

② 협회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

③ 협회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.

제3조(정관) 협회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·8·8>

1. 명칭
2. 사업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
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5. 운영협회 운영기금 및 재정, 감사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기능) 협회회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2·8·8>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3.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·개축 건의
4.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
5.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제5조(기구) ① 협회회에는 각 통·리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어느 한 성(여성 또는 남성)의 비율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12·8·8>

-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·8·8>

제6조(임원)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2·8·8>
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1명
- 3. 운영위원 15명 이내
- 4. 감사 1명

- ②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.
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회의의 총괄하고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2·8·8>
-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.

제7조 삭제 <2012·8·8>

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- 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 - 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[본조신설 2012·8·8]

제9조(수당 등)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·8·8]

제10조(재정)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.

[전문개정 2012·8·8]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<2012·8·8>]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·8·8]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<2012·8·8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·8·8 조례 제94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